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76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박승진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고광민,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민병주,
서준오, 송도호, 유만희,
유정희, 이상욱, 이영실,
이용균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까지 포괄적으로 강화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협력을 명문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명을 변경함
- 나. 시장의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협력 강화를 규정함(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를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을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이 이루 어지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을 촉진하기”를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의 환경 조성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 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촉진하기”를 “촉진하고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로, “대책”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고등학교졸업자”를 “고등학교졸업자의 현황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등학교졸업자”를 “고등학교 졸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을 “고등 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 안정화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직업 지도”를 “직업 교육 및 지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고용촉진”을 “고용 촉진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의”를 “제1항에 따른 계획의”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를 “계획에”로 한다.

2.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 안정화 지원에 관한 목표와 시행계획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사업)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취업 후학습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계획 수립 및 제4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당”을 “해당 공기업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관장”을 각각 “공기업 등의 기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를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중앙행정기관 및”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등의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과 기업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

이루어지도록 -----

② -----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① -----

----- 촉진하고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 -----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

1. ----- 고등학교졸업자의 현황 및 --

2.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 안정화 지원에 관한 목표와 시행계획

3. ----- 고

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 업

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생략)
 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등학교졸업자의 -----

4.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 안정화를 -----

5. 직업 교육 및 지도-----

6. (현행과 같음)

7. ----- 고용촉진 및 지원-----

② ----- 제1항에 따른 계획
의 -----

계획에 -----
-----.

제4조의2(지원사업)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취업 후 학습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 계획 수립 및 제4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 해당 공기업 등의 ----- ----- -----.

② 공기업 등의 기관장----- ----- -----.

③ 공기업 등의 기관장----- ----- -----.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 촉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

<p>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u>중앙행정기관</u>,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p> <p>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u>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u>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 ----- -----.</p> <p>② ----- <u>서울특별시교육감</u>, <u>중앙행정기관</u> 및 ----- ----- ----- -----.</p> <p>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 <u>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u> 및 <u>고용안정</u> 등의 지원----- ----- -----.</p> <p>② (현행과 같음)</p>
---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4조의2(지원사업)	△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및 고용 안정화 지원 조성 등에 관한 사업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으로 검토계획된 바 없어 객관적 추계가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4조의2(지원사업)의 고등학교졸업자 대상 고용촉진 및 고용 안정화 지원 사업비용은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경제실 일자리정책과)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객관적인 추정이 곤란함
 - 참고로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현재 서울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지원¹⁾ 명목으로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경비를 보조²⁾하고 있으나, 해당 안의 경우 고용안정에 관한 사안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어 기추진사업 외 별도의 사업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임

(참고)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 (사업추진 형태 결정 필요) 사업 추진형태에 따라 소요비용 편차가 크므로 정책적 결정 전제 필요
 - 추계 관련 자료수집을 위해 해당 안과 유사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타 지자체(부산광역시)에 사업추진 형태를 유선상 문의하였으나, 부산시의 경우 서울시에서 기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사업과 유사한 부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에 관한 근거로 해당 규정을 활용(예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이 규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이에 타 지자체 유사사례를 활용한 합리적 추계 또한 현재로서는 곤란함

1) [교육부 매칭사업]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자체-교육청 간 직업교육 플랫폼'을 통해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하는 고졸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4년에 선정되어 철도, 인공지능 등 산업분야별 서울형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기추진하고 있음

2) [기추진사업] 서울시 평생교육국 2025년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 17,464,656천원
⇒ 서울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지원 375,000천원 포함하며 해당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 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에 의거하여 교육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